

의안
번호

35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59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07.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서울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별표1의 성북구 청소년시설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등 관련 조항 수정(안 제8조제2항제6호)

- 1) '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으로 수정

나. 별표 1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시설명 및 위치 변경 (안 별표1)

- 1) 현행 별표에서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삭제
- 2) 청소년 놀터 위치를 '보문로29길 49 외 7'에서 '보문로29길 49 외 4'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9. 19. ~ 2024. 10. 1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 조항을
서울시 관련 조례에 맞추어 정비하고 청소년 시설 목록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
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8조제2항 제6호**는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고
- 기존 조례 제8조제1항(사용료 등)에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기재된 자녀수가 3이상인</u>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6. <u>성북구에 주소를 둔</u> ----- -----

- **별표 1의 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시설 목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2020.11 폐지한 시설 “성북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청소년 놀터 시설 감소를 반영하여 수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 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별 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시설명	기능	위치	시설명	기능	위치
성북 청소년문화 공유센터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및 활동 지원 ·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활동 공간 운영	동소문로26 다길 8-2	(삭제)	(삭제)	(삭제)
청소년 놀터	· 청소년들의 “놀이” 및 “쉼” 중심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 운영 · 청소년 자치 및 소모임 활동 지원	<u>보문로29길 49 외7</u>	청소년 놀터	(현행과 같음)	<u>보문로29길 49 외4</u>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관련 사용료 감면을 정비하고 시설 현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용료 감면대상이 3인이상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성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기존 수혜자의 민원 발생이 있을 수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